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760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인선·고동진·배준영

김태호 · 최수진 · 김정재

이달희 · 김기현 · 성일종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조성의 감소 가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8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 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030년 12월 31일-----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 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 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 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 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 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5년 12월 31 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 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2030년 12월 31일
③
2030년 12월 31일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 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 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 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 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증 한 자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⑧ (생 략)

4
<u>2030</u>
년 12월 31일
⑤ ~ ⑧ (현행과 같음)